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www.motie.go.kr
2013년 7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반성장팀 최우혁 팀장(2110-3994), 김승태 사무관(2110-3998)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95개 대기업·공기업 협력사 총 5,167개社 대상 현장·서면조사 실시 -

< 실태조사 결과 골자 >

①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중 인하횟수는 연 1회(71.3%), 인하율은 5% 이하(74.9%)가 가장 빈번**

- **특히, 현장 조사에서는 총 902개社 중 23.9%(216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② **부당 납품단가 인하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인 단가인하,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정 순으로 빈번**

- **업종별로는 통신(12.0%)이 불공정거래 경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③ **중소기업은 최근 1차와 2·3차간 불공정거래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거래단절 우려가 있어 조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

- **(SW) 공공부문 대기업 참여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에 의한 단가 인하 요구가 지속**

- **중소기업은 협력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단가 반영, 부당감액 발견시 직원징계 등 일부 대기업의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

④ **금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동반위 신고센터 운영 등)**

⑤ **조사결과는 해당 기업에 통보(장관친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불공정 행위가 중대한 사안은 관계부처에 조사의뢰**

□ 산업부(장관 : 윤상직)는 지난 5월 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부처·기관별 실무자 100명으로 구성(반장 :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 산업부,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 동반성장평가 대기업(74개), 공기업(21개) **협력사 총 6,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경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음

* 총 6,430개 기업 중 5,167개 조사완료(80.4%)
- (현장) 총 1,000개 기업 중 902개 (서면) 총 5,430개 기업 중 4,265개
- 1,263개 기업은 조사거절 등의 사유로 조사불가

< 조사결과 분석 >

□ **(총평)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고 **적정단가 만족도는 78.3점**으로 조사, 특히, **현장조사에서는 총 902개社 중 23.9%(216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하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 인하(56.8%),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28.4%) 순**으로 나타남

<유형별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 유형	응답수	비율(%)	대표업종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단가 인하	**204**	**56.8**	**통신**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	**102**	**28.4**	**건설**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감액	90	25.1	조선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등을 사유로 감액	79	22.0	전기·전자
모기업 차원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인하 종용	67	18.7	화학·금속·비금속
단가인하 이후 소급적용	44	12.3	자동차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여 단가 인하	39	10.9	전기·전자
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단가 인하	30	8.4	조선
차후 납품시 인상조건으로 속여 단가 인하	28	7.8	통신
일방적 발주취소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	21	5.8	정보
협력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단가 인하	16	4.5	통신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감액	5	1.4	공공기관

○ **(인하횟수)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1회 경험한 경우가 71.3%, 2회(15.6%), 3회(6.4%), 4회(6.7%) 순**으로 조사

○ **(인하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5% 이하가 74.9%**로 가장 많고, **10% 이하도 25.1% 수준**으로 나타남

○ **(납품단가 인상)** 총 **5,167개社 중 2,529개社(48.9%) 협력사가 납품단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 불공정 거래경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통신(12.0%),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8.5%), 조선(8.0%), 유통(7.6%), 자동차(7.0%), 화학·금속·비금속(6.3%), 공공기관(2.4%) 순

< 업종별 주요사례 >

① **(SW)** 공공부문 대기업 입찰참여제한에 따라 중견기업이 물량을 대부분 가져가는데, **중견기업의 단가인하 요구가 지속**

② **(건설)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 비용**에 대해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 **대기업에서 적정한 대가지급이 필요**

③ **(유통) 대형마트 판매수수료가 35~40% 수준**으로 높아 영업 애로

□ **(모범사례)** 협력사를 대상으로 **적정 납품단가 조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단가를 반영하는 사례**(L社) 등 일부 대기업의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윤리경영팀 운영을 통해 **부당감액 발견시 내부직원 징계**를 하고 있어 **부당감액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S社)

○ **원자재 수입단가를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 저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적정 납품단가를 반영**(H社)

<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

□ 금번 실태조사시 중소기업인들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개선**을 위해 **현장조사 필요성 등**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피력하였음

① 관계부처의 **비슷한 설문조사가 많아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대다수, **현실감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조사방식**을 **현장중심으로 개편** 필요

* 금번 실태조사시 **부당 단가인하 경험비율**
- (현장) 총 902개 기업 중 216개(23.9%), (서면) 4,265개 기업 중 143개(3.4%)

②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등 우려**가 있어 **조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

③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구매·사업부서 등 **기업 전반으로의 파급은 아직 미흡**

* 구매담당 임직원은 원가절감을 위한 단가 인하를 성과평가의 핵심으로 인식

④ 중소기업은 **경기불황시 고통 분담을 수용**해 왔으나, **경기안정시에도 적정 단가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 중소기업은 現 시점에서 일부 대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적정 납품단가반영보다 중요하다는 입장

< 후속대책 및 조치사항 >

□ 금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 대기업, 공기업 **협력업체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불시 조사 결과 부당행위 적발 시 그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중기청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고발요청권 적극 활용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동반위)**를 **운영**하여 부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채널 확대**

* 제보 시 대기업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사례 방지를 위해 무기명으로 신고토록 개편

○ 특히, **불공정사례 및 적정 납품단가 모범사례**는 **대·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관련 조합·협회** 등에 **전파**하여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 전반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임

□ 또한, **기업별 조사결과**는 **해당 기업에 통보**(장관친서), **동반성장 지수 평가('14)에 반영**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정위, 중기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

*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 넣어 입찰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불공정거래 시도

* 별도 서면계약없이 단가인하·지급지연, 중소기업에게 판매수수료, 판촉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

* 부당특약사항 반영, 고의적인 유찰 감행 등 불공정 사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팀 김승태 사무관(☎ 02-2110-39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납품단가 실태조사 대상 대기업·공기업 : 총 95개

대기업(74개)		공기업(21개)
기아자동차	현대미포조선	인천국제공항공사
대림산업	현대백화점	인천항만공사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국가스공사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한국공항공사
동부건설	현대엠코	한국남동발전
두산건설	현대위아	한국남부발전
두산엔진	현대자동차	한국농어촌공사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한국도로공사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동서발전
롯데건설	현대홈쇼핑	한국마사회
롯데마트	롯데케미칼	한국서부발전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한국석유공사
롯데제과	효성	한국수력원자력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한국수자원공사
삼성디스플레이	CJ제일제당	한국전력공사
삼성물산	GS건설	한국중부발전
삼성엔지니어링	GS홈쇼핑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성전기	KCC	한국철도공사
삼성전자	KCC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삼성중공업	KT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코닝정밀소재	LG CNS	한국환경공단
삼성테크윈	LG디스플레이	
삼성SDI	LG생활건강	
삼성SDS	LG유플러스	
신세계백화점	LG이노텍	
웅진코웨이	LG전자	
이마트	LG하우시스	
제일모직	LG화학	
코오롱글로벌	LS산전	
포스코	LS전선	
포스코건설	SK C&C	
한국지엠	SK건설	
한진중공업	SK종합화학	
한화건설	SK텔레콤	
현대건설	SK하이닉스	
현대로템	STX조선해양	
현대모비스	STX중공업	

참고 2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주요 사례

〈사례 #1〉

중소기업 A社는 대기업 B社에 납품을 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B社 구매부서에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요구하였다. 최근에는 경쟁입찰시 고의적으로 유찰을 감행하거나 최저가를 제시한 경쟁사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저가의 낙찰을 유도하고 있다.

〈사례 #2〉

중소기업 C社 사장은 대기업 D社 구매담당자로부터 지난해까지 연 1회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경험을 겪었다. D社 구매담당자는 모기업의 원가절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여 C社 사장은 협조차원에서 단가인하를 수용해 왔다. 그러나, 올해 D社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구매담당자는 수시로 5%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구매담당자가 바뀌면 본인 실적을 위해 단가인하를 요청하는 식이다.

〈사례 #3〉

중소기업 E社는 대기업 F社에 차년도 단가인하 계획을 협의형태로 결정하는데 인건비, 환율변동 등 인상안을 제시해도 일률적으로 단가인하를 경험하였다. 최근에는 납품단가 조사 등 원가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단가인하를 종용받는다.

〈사례 #4〉

중소기업 G社는 대기업 H社와 거래하면서 계약서에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원가 반영을 해줄 수 없다'는 부당특약을 맺었고,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사유로 연 3회, 평균 7% 단가인하를 요구받았다

〈사례 #5〉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 포상도 다수 받은 I社는 유망 중소기업이었으나, 대기업 J社의 부당한 단가인하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각, 통상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에서 적정 이익을 제외하고 협력사와 단가협상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손실이 없고, 협력사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

참고 3 적정 납품단가 반영 모범 사례

〈사례 #1〉

A중소기업은 수시로 뛰는 원자재값으로 인해 단가책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거래하고 있는 B대기업이 동반성장 차원에서 원자재 수입단가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수혜를 보고 있음. A중소기업은 전산시스템에 수시로 원자재 수입단가를 입력하면 대기업에서 검토한 뒤 적정 납품단가를 반영해주고 있음

〈사례 #2〉

C중소기업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저가수주가 많은 형편이었는데, 거래하는 D대기업에서 저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저가 입찰의 폐해를 막고 합리적인 단가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사례 #3〉

E대기업에서 유사한 제품을 납품하는 여러 협력사의 적정 납품단가를 조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적정 납품단가를 책정해주고 있어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음

〈사례 #4〉

F대기업은 그룹사 차원의 윤리경영팀 운영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이 예전에 비해 크게 개선됨. 협력 중소기업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발되면 대기업 내부직원들을 징계하고 있어 불공정 관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음